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MANUAL

대학혁신사업추진단 | 2023. 04.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Contents

PART 1. 대학혁신사업추진단 운영규정	005
-------------------------------	------------

PART 2.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	009
-----------------------------------	------------

PART 3.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세부 집행 내용	013
• 사업비 세부 집행 요령	014
• 품의서 작성 요령	015
• 결의서 작성 요령	020
• 부서별 예산 집행 내역 확인	024
• 출장허가원 작성 요령	025
• 사업비 집행 기준 및 증빙양식	026

PART 4. 한국연구재단 대학혁신지원사업('22~'24)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053
--	------------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MANUAL



PART 1. 대학혁신사업추진단 운영규정



PART 1

대구대학교 대학혁신사업추진단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대구대학교 대학혁신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

제2조(사업의 명칭)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명칭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사업의 추진 및 목표관리에 관한 사항
- ③ 사업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④ 사업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4조(단장 및 부단장) ① 추진단에는 단장을 둔다.

- ②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사업단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여 둘 수 있다.

제5조(조직 및 전담인력) ① 추진단에는 대학혁신사업추진팀을 둔다.

- ② 대학혁신사업추진팀에는 전담직원 및 연구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사업추진단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담당한다.
- ③ 직원에 대한 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대학혁신운영위원회) ① 추진단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3. 1.>

- ②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며, 학생위원, 외부위원을 포함한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1.>

- 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 3. 1.>
 - 1. 사업 계획 및 전반적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2.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자체평가 결과 심의에 관한 사항
 - 3. 사업운영 규정 및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4. 자율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 5. 기타 사업단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 ⑥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심의분과를 둘 수 있으며, 해당 분과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각종 연구 및 외부용역 결과 등에 대해 심의한다. <개정 2022. 3. 1.>

제7조(대학혁신운영실무위원회) ① 사업단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대학혁신운영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으로 보하고, 교내 실무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세부 프로그램 별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2.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 3. 기타 사업단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 [본조신설 2022. 3. 1.]

제8조(연차평가 준비위원회) ①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연차평가와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을 목적으로 외부위원이 포함된 연차평가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대학혁신운영위원회의 교내위원과 대학혁신운영실무위원회의 실무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연차평가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실시 후 개선사항 피드백 및 평가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세부사업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단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3. 1.]

제9조(사업비) 사업단의 사업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2. 3. 1.>

1. 국고지원금(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2. 교비 예산
3. 기타 재원

제10조(회계연도) 사업단의 회계연도는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협약에 따른 사업연도와 같다. 다만, 재원의 성격에 따라 사업비 지원기관과의 지원협약에 의한 사업연도는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집행) ① 사업단의 사업비는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대구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 「대구대학교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등 예산회계 관계법령 및 관리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3. 1.>

②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간 보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MANUAL



***PART 2.*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



PART 2

대구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함) 사업비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비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지침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고지원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이 지침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과 대구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사업비 관리

제3조(사업비 관리) ① 한국연구재단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에 따라 국고 지원금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좌로 통장을 개설·관리한다.

② 사업비 관리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업비는 중앙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비 집행 기간) 사업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기간은 매년 3월부터 익년 2월 말로 한다.

제5조(국고지원금 계정관리) 사업의 국고지원금은 별도 계정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중앙관리조직)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해 기획처 예산재정팀, 사무처 재무팀을 사업비 중앙관리조직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 8. 1.>

제3장 사업비 집행

제7조(사업비 집행 원칙) ① 사업비는 매년도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교비와 국고를 구분하여 집행하고, 세부 집행 기준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기준[별첨]’ 과 같다.

③ 사업비는 내부결재, 원인행위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의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품의서 및 결의서는 사업비 중앙관리조직의 사전 검토 후 집행한다.

⑤ 사업비 집행은 인건비 지급 또는 물품 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전용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환급 법인세 포함) 및 지체상금은 총 사업 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사업비 집행기준) 본 사업 계획을 근거로 하여 [별첨]의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 수혜 대상) 사업비의 수혜 대상은 학부생 및 대학원 재학생, 동 사업을 위해 채용된 교직원 등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 집행 제한) 사업비는 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한 목적 이외로 집행할 수 없으며 제11조에 해당할 경우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 목적 외 사용 및 부당 사용)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비 목적 외 사용으로 본다.

1. 사업계획서(사업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예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2. 기타 동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비 부당사용으로 본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집행

2. 부정확한 집행 증빙
3. 사업비의 횡령 및 유용

제12조(사업비 조정 및 지원중단) 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추진부서가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진행 상황보고 등을 하지 않는 등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 경우 사업추진부서의 사업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사업추진부서의 차년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목표 및 성과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도별 지속 지원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

제4장 사업비 정산

제13조(사업비 지출 증빙) 사업비 집행을 지출 증빙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 시 붙임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2.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3. 법인카드명세서(개인 신용카드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4. 강사료 및 인건비는 반드시 해당 본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5. 대구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6. 상기의 지출증빙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단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지출을 증빙할 수 있음

부 칙

이 지침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0년 04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MANUAL



PART 3.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세부 집행 내용

• 사업비 세부 집행 요령	014
• 품의서 작성 요령	015
• 결의서 작성 요령	020
• 부서별 예산 집행 내역 확인	024
• 출장허가원 작성 요령	025
• 사업비 집행 기준 및 증빙 양식	026



PART 3

사업비 세부 집행 요령

단계	내용										
사업계획(안) 공문 내부결재	- 부서별 프로그램별로 계획서를 전자결재 공문으로 작성하고 <u>반드시 대학혁신사업 추진팀장 협조하여 결재 완료</u> - 공문제목 작성형식: [대학혁신] + '제목' - 부서별 프로그램 사업계획(안) 파일 첨부-대학혁신사업추진팀 제공 양식 활용										
품의서 작성 (예산 합의)	- 품의서 작성 후 <u>대학혁신사업추진팀 사업 담당자 협조하여 결재 진행</u> <table border="1"> <tr> <td>전공, 교양 영역, 공유 · 협력사업, DU-혁신선도분야 육성 사업</td><td>그 외 사업</td></tr> <tr> <td>정재경(5327)</td><td>김정희(5328)</td></tr> </table> - 국고 법인카드 사용 시, 전자결재 정산서에 세부내역 입력 후 품의서에 등록 (※ 개인용 법인카드 사용불가) -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본부 회계기준을 준용, 사무분장위임전결규정 또한 본부 절차에 따라 실시 100만원 초과 금액의 구매(자산 포함)와 300만원 초과 금액의 시설공사(시설유지 보수비 포함) · 항공권 구매는 총무팀으로 품의하여 구매 · 계약이 진행됨(단가계약 품목 구매 시 당해부서에서 직접 구매 진행) - 기자재매입비(100만원 이하 내지 단가계약 품목 제외), 시설공사, 시설유지보수비는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2023년 예산편성지침 p.63 참조) <table border="1"> <tr> <td>정산서</td><td> - 품의서 작성 요구내역과 동일하게 작성 - 회의비나 식/다과비의 경우 참석인원 구체적으로 작성 - 법인카드 건에 대한 정산은 반드시 월별 구분하여 작성 </td></tr> <tr> <td>비전자 증빙</td><td> - 비전자증빙을 첨부하는 품의서와 동일하게 작성 - 활동지원비(실비정산)의 경우 비전자증빙 생성 후 정산서에 연결 후 품의서에 첨부 - 인건비 및 특강료의 경우 비전자증빙 생성 후 결의서-증빙서류에 첨부 </td></tr> <tr> <td>출장 허가원</td><td> - 출장비 구분은 일반(본부)로 지정 ※ 교수 임장지도 관련 건은 일반본부(임장지도)로 선택: 교원업적에 포함됨 (단, 단과대학 예산을 통한 임장지도비 수혜 불가) - 비고란에 '대학혁신지원사업' 작성(교비 지출 방지를 위함) </td></tr> </table>	전공, 교양 영역, 공유 · 협력사업, DU-혁신선도분야 육성 사업	그 외 사업	정재경(5327)	김정희(5328)	정산서	- 품의서 작성 요구내역과 동일하게 작성 - 회의비나 식/다과비의 경우 참석인원 구체적으로 작성 - 법인카드 건에 대한 정산은 반드시 월별 구분하여 작성	비전자 증빙	- 비전자증빙을 첨부하는 품의서와 동일하게 작성 - 활동지원비(실비정산)의 경우 비전자증빙 생성 후 정산서에 연결 후 품의서에 첨부 - 인건비 및 특강료의 경우 비전자증빙 생성 후 결의서-증빙서류에 첨부	출장 허가원	- 출장비 구분은 일반(본부)로 지정 ※ 교수 임장지도 관련 건은 일반본부(임장지도)로 선택: 교원업적에 포함됨 (단, 단과대학 예산을 통한 임장지도비 수혜 불가) - 비고란에 '대학혁신지원사업' 작성(교비 지출 방지를 위함)
전공, 교양 영역, 공유 · 협력사업, DU-혁신선도분야 육성 사업	그 외 사업										
정재경(5327)	김정희(5328)										
정산서	- 품의서 작성 요구내역과 동일하게 작성 - 회의비나 식/다과비의 경우 참석인원 구체적으로 작성 - 법인카드 건에 대한 정산은 반드시 월별 구분하여 작성										
비전자 증빙	- 비전자증빙을 첨부하는 품의서와 동일하게 작성 - 활동지원비(실비정산)의 경우 비전자증빙 생성 후 정산서에 연결 후 품의서에 첨부 - 인건비 및 특강료의 경우 비전자증빙 생성 후 결의서-증빙서류에 첨부										
출장 허가원	- 출장비 구분은 일반(본부)로 지정 ※ 교수 임장지도 관련 건은 일반본부(임장지도)로 선택: 교원업적에 포함됨 (단, 단과대학 예산을 통한 임장지도비 수혜 불가) - 비고란에 '대학혁신지원사업' 작성(교비 지출 방지를 위함)										
검수요청서 작성 (물품 검수)	- 물품 구입 시 '물품 인수 증빙서류' 서식을 활용하여 검수요청서 작성 (부패성 음식 제외) - 물품구입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발주부서 검수 (단, 자산등재가 필요한 경우 수신부서는 자산관리팀으로 지정)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검수부서에서 검수(*2023년 예산편성지침 p.71 참조)										
결의서 작성(자금 집행)	결의서 작성 후 <u>대학혁신사업추진팀 사업 담당자 협조하여 결재</u>										
운영 결과보고서 공문 내부결재	- 부서별(코드별)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 작성한 운영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시 <u>대학혁신사업추진팀장 협조 필수</u> - 공문 제목 작성형식: [대학혁신] + '제목' - 운영 결과보고서 양식: 대학혁신사업추진팀 제공 양식 활용 - 내부결재 시 부서별 예산 집행 내역 확인 철저										



품의서 작성 요령

- ★ TIGERS+ → 공통업무 → 전자결재 → 문서작성 → 품의서 클릭
- ★ 품의서 제목 작성 시 [대학혁신] 문구 반드시 포함
- ★ 결재 시 대학혁신사업추진팀 예산 담당자 협조 실시

전공, 교양, DU-혁신선도분야 육성 사업, 공유협력 사업	그 외 사업	Care 프로그램 전체(All in Care 제외)
정재경(5327)	김정희(5328)	김경혜(5326)

- ★ 프로그램 코드 선택 필수

❖ 품의서(지출) - 예산집행

- 품의구분: 기안품의 (그 외 품의내역에 맞게 선택)
- 예산구분: [150040]대학혁신사업추진단
- 회계구분: 교비-비등등록금
- 프로그램 선택: 부서별 운영 프로그램 현황의 사업코드와 동일하게 선택
- 계정과목: 부서별 프로그램 현황의 계정과목과 동일하게 선택
- * 사업별 예산과목 다름 (각 부서에 따라 다르므로 계정과목 주의 !!)
- 요구내역: [대학혁신] + 구체적인 관련 내용 명시
- 예산구분: (2023사업예산)(대학혁신)사업관리 및 운영
- 재원구분: [GO]국고(대학혁신지원사업)

● 기본정보

신청부서	대학혁신사업추진단 대학혁신사업추진팀	신청자	김정희	전화번호	5328	회계년도	2023
품의구분	기안품의	신청일자	2023-04-11 화	품의서번호	150045		
요구내역	[대학혁신] ○○○ 프로그램 회의비 정산						
예산부서	[150040] 대학혁신사업추진단	예산배정학과					
예산구분	(2023사업예산)(대학혁신)사업관리 및 운영-1						
회계구분	교비-비등등록금	재원구분	[GO] 국고(대학혁신지원사업)				
비고							
예산제합의	☐ (대합의시 체크하고 저장 후 재합의 결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품목

순번	종명	수량	추정단가	결정단가	계정과목
	금액	단위	추정금액	결정금액	
+	○○○ 프로그램 회의비	1		73,000	교비>기타학생경비-기타-
				73,000	

			0	73,000	
--	--	--	---	--------	--

규격실명서 기소재 활용 계획서

첨부파일(0건) 부속서류(0건)

순서	파일명	부서명
----	-----	-----

프로그램	[311E] [혁신선도]틀라·화한교육과
	[311F] [혁신선도]반려동물산업학과
	[311G] [혁신선도]사회복지학과
	[311H] [혁신선도]산림자원학과
	[311I] [혁신선도]산업디자인학과
	[311J] [혁신선도]식품영양학과
	[311K] [혁신선도]일본어일본학전공
	[311L] [혁신선도]정보통신공학전공
	[311M] [혁신선도]컴퓨터정보공학부
	[311N] [혁신선도]패션디자인학과
	[4111] 연구윤리실의 활성화 및 연구윤리 의식 제고
	[4211]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구축
	[4411]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표절검사 프로그램 지원
	[4511] 학문후속세대 연구과제 지원사업
	[5211] 스마트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5311] DU IP Bridge 운영
	[5411] 메이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6111] 직원 전문경력개발 교육운영
	[6211] 대학경영 미래전략 수립
	[7211] 교육연구환경 개선
	[7311] 교육연구 환경 개선(기재 교체)
	[8111] 사업 관리 및 운영
	[8211] 대학 운영 혁신 전략
	[8311] 대학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8411]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
	[8511] 지역사회 동반성장 체계 마련
	[8611] 대학 간 공유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 지원
	[X] 해당없음

❖ 품의서(수입) – 인건비 및 특강료에 대한 세금공제 시

- 품의구분: 기안품의
- 요구내역: 000에 대한 제세예수금임을 기재하여 작성
- 예산부서: [150040]대학혁신사업추진단
- 예산구분: (2023사업예산)(대학혁신)사업관리 및 운영
- 회계구분: 교비-비등록금
- [재원구분]: X, [프로그램]: X, [계정과목]: 제세예수금(소득세, 지방소득세)
- 제세예수금 품의서는 예산합의 생략 항목임, 수신부서X, 최종부서 지정
 - ※ 제세예수금(2023년 예산편성지침 p.72 참조)
 - 특강료 및 기타소득: 125,000원 초과 시 지급액의 8% 소득세, 0.8% 지방소득세로 공제
 - 다수경쟁에 따른 시상금: 250,000원 초과시 4.4% 제세금 공제

● 기본정보

저장

신청부서	대학혁신사업추진단 대학혁신사업추진단	신청자	김정희	전화번호	5328	회계년도	2023
품의구분	9 기안품의	신청일자	2023-04-11 화	품의서번호	150045		
요구내역	[대학혁신]○○○ 프로그램 특강료(○○○) 제세예수금						
예산부서	[150040] 대학혁신사업추진단	예산배정학과					
예산구분	(2023사업예산)(대학혁신)사업관리 및 운영-1						
회계구분	교비-비등록금	재원구분		프로그램			
비고							
예산재합의	☐ (재합의시 체크하고 저장 후 재합의 결과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및 자체 구매 ☐ 온라인 및 자체 구매 시 체크하세요.			

● 세부품목

추가 삭제

순번	품명 규격	수량 단위	추정단가 추정금액	결정단가 결정금액	계정과목	보관장소 원가부서	건물 비고	물품책임자 성명(개인물품)
+	소득세	1		24,000	교비)제세예수금-소득세-기타소득	대학혁신사업추진		
				24,000				
+	지방소득세	1		2,400	교비)제세예수금-지방소득세-기타소득	대학혁신사업추진		
				2,400				
			0	26,400				

❖ 정산서

TIGERS+ → 공통업무 → 전자결재 → 문서작성 → 정산서 클릭

발송 저장 삭제 닫기

● 기본정보

정산서 구분	회의비,업무추진비 정산			거래명세표
정산서 번호	작성일자	2023-04-11 화	상태	작성
1 정산 내역				
정산내역	[대학혁신]○○○프로그램 회의비 정산			
정산액	수량액		차감액	
수신부서	대학혁신사업추진단 대학혁신사업추진팀			

2 세부내역 추가 삭제

순번	내용	일자	수량	단가	금액	참석자	비고
		정산자	장소				
+	회의비(식비)	2023-03-22	1		73,000	○○○외 6명	
		정산하는자 작성	회의 장소 작성				
					73,000		

● 증빙서류 **3** 증빙 추가

순번	보기	증빙구분	사업자번호	거래처명	발행일자	승인시간	금액	사용자	거래처등록	부속지급	부속일치
----	----	------	-------	------	------	------	----	-----	-------	------	------

- ① 정산 내역: 품의서에서 작성한 요구내역과 동일하여야 함
- ② 세부 내역
 1. 내용: 정확한 품명 기재
 2. 일자: 법인카드 결제 일자 동일하게 기재
 3. 정산자: 정산하는 자 작성(법인카드: 품의서 작성자, 비전자증빙: 정산 받는 자)
 4. 수량, 단가, 금액, 장소 기재
 5. 참석자: ○○○외 ○○명 필수 기재(참석자가 없는 정산일 경우, 비고에 구매처 등 작성)
- ③ 증빙추가: 법인카드 전표 또는 비전자증빙 첨부
- ④ 법인카드 정산은 반드시 월별로 하여야 함
예시) 5월, 6월 법인카드 사용은 월별로 구분하여 품의(정산)하여야 함

❖ 비전자증빙

TIGERS+ → 공통업무 → 전자결재 → 문서결재 → 비전자증빙 관리 → 영수증 및 청구서 추가 클릭

* 활동지원비(실비) 정산

3
파일첨부
증빙양식출력
저장
삭제
닫기

관리번호		작성일자	2023-04-11 화	
공유여부	☒ 공유	공유부서	150045	대학혁신사업추진단 대학혁신사업
증빙구분	☒ 영수증 및 청구서 ☐ 수기(세금)계산서 (스마트빌 이외 전자계산서 포함)			
1 집행내역	[대학혁신]해당 품의서명과 동일하게 작성			
품의서번호				

2
추가
삭제

순번	영수증구분	영수일자	영수금액	사업자
	적요			
1	현금지출증빙(현금영수증)	2023-04-11 화	32,800	활동지원비 정산받는 자
	정산받는 내역			

① 집행내역은 비전자증빙을 첨부하는 해당 품의서명과 동일하게 작성

② 세부품목

1. 영수증구분: 증빙하고자 하는 영수증 성격에 맞게 구분하여 선택
2. 영수일자, 금액, 사업자, 적요: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③ 파일첨부: 현금영수증 등 정산 관련 파일 첨부

④ 활동지원비(실비)정산의 경우 정산서-증빙서류에 비전자증빙을 증빙 추가 후 해당 정산서를 품의서에 첨부

* 인건비 및 특강료

3 파일첨부 증빙양식출력 저장 삭제 닫기

관리번호		작성일자	2023-04-11 화
공유여부	☒ 공유	공유부서	150045 대학혁신사업추진단 대학혁신사업
증빙구분	☒ 영수증 및 청구서 ☐ 수기(세금)계산서 (스마트빌 이외 전자계산서 포함)		
1 집행내역	150045[대학혁신]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부서별 간담회 (기획처 외 1건)		
품의서번호	150045202300009		

2

순번	영수증구분	영수일자	영수금액	사업자
	적요			
1	청구서	2023-04-11 화	300,000	인건비 및 특강료 정산받는 자
	품의 내역			

추가 삭제

① 집행내역은 품의서번호-돋보기모양 선택 후 품의서 내역 선택하면 자동 작성

② 세부품목

1. 영수증구분: 증빙하고자 하는 영수증 성격에 맞게 구분하여 선택
2. 영수일자, 금액, 사업자, 적요: 해당 품의 내용에 맞게 작성

③ 파일첨부: 청구서 등 정산 관련 파일 첨부

④ 인건비 및 특강료의 경우 결의서-증빙서류[영수증]에 비전자증빙 첨부

※ 비전자증빙에 필요한 영수증, 청구서 등 지출증빙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보관 바람

❖ 미종결신청서

TIGERS+ → 공통업무 → 전자결재 → 문서결재 → 부서결재완료함 → 미종결신청 클릭

결재할문서 ×
결제한문서 ×
부서결재완료함 ×

공통업무 > 전자결재 > 문서결재 > 부서결재완료함

· 서식구분

품의서

· 기간

2023-03-01

~

2024-02-29

· 작성자

정재경

· 처리상태

전체

처리중

처리완료

취소문서

· 제목

1

미종결신청

조회

수신현황

파일

정렬

취소

저장

첨부

담기

* 품의서 결재완료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미종결신청으로 수정 가능

① 부서결재완료함 → 수정 필요한 품의서 선택 후 미종결신청 클릭

② 신청유형

- 예산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예산합의 선택
- 재예산합의를 제외한 수정은 일반 선택
(※ 단, 결의서까지 결재완료되면 재예산합의만 선택 가능)

③ 상세사유 작성 → 미종결신청서 결재 → 결재할문서에서 품의서 수정 가능

④ 품의서 수정 후 재결재올림



결의서 작성 요령

★ TIGERS+ → 공통업무 → 전자결재 → 문서작성 → 결의서 클릭 → 품의서 가져오기 → 결의서 작성할 품의서 클릭

★ 결재 시 대학혁신사업추진팀 예산 담당자 협조 실시

전공, 교양, DU-혁신선도분야 육성 사업, 공유협력 사업	그 외 사업	Care 프로그램 전체(All in Care 제외)
정재경(5327)	김정희(5328)	김경혜(5326)

❖ 지출결의서

- [결의서 구분]: '지출' 선택
- [전도/미지급금]: '일반' 선택
- [부속지급내역]
 - 공통: 지급대상자의 성명(거래처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등 상세히 기재
 - 인건비 및 특강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세히 기재/ 징수구분란은 '근로', '기타', '퇴직' 중 해당 부분 선택/ 제세예수금도 함께 기재
- [증빙서류(영수증)]에 발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특강자 비전자증빙 연결
 - ※ 인건비 및 특강료 지출결의서 작성(제세예수금 공제 시)시 국고에 대한 지출결의서와 교비에 대한 수입결의서를 한 세트로 작성해야 함(2023년 예산편성지침서 p. 159~160 참조)
 - ※ 본교 소속 교직원의 경우 세금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수입 품/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음

기본정보

회계년도	2023	결의서번호	G150045202300007		
회계구분	교비	비동목금	작성자	정재경	작성일자
결의서구분	지출	전도/미지급금	일반	관련결의서번호	
금액	279,000	사실공사	사할없음	건축물관련번호	
내역	[대학혁신]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부서별 간담회 (디지털혁신팀 외 1건)				
작성부서	대학혁신사업추진단 대학혁신사업추진단	종의부서	대학혁신사업추진단 대학혁신사업추진단	예산부서	대학혁신사업추진단
재원	국고(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8111] 사업 관리 및 운영	예산배정학과	
출납구분		출납예정일자	- -	지체상한금	0

세부품목

순번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계정과목
1	회의비(식대)_4/3		1		200,000	200,000	교비>기타학생경비-기타-
2	회의비(다과)_4/3		1		43,000	43,000	교비>기타학생경비-기타-

부속지급내역

정산서

사실하자

공공요금

건물비용

부속지급내역서

결의서번호	G150045202300007	종의서번호	150045202300009	결의서금액	279,000
내역서구분	공통	내역	[대학혁신]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부서별 간담회 (디지털혁신팀 외 1건)		

종별관련 거래내역 생성

이전부속지급 가져오기

자료구분에서 가져오기

징수구분 일괄변경

파일다운로드

파일업로드

세부내역(엑셀 업로드시 사번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성명/거래처명	개인번호/거래	주민번호	내역	지급액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인
1	파리바게트(대구대)	94381	515-04-73212	[대학혁신] 2023년 대학혁	36,000	대구은행	207-13-304226	파리바게트(0	대구대대학선

부속지급내역서

결의서번호	G150045202300007	종의서번호	150045202300009	결의서금액	279,000
내역서구분	인건비 및 특강료	내역	[대학혁신]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부서별 간담회 (디지털혁신팀 외 1건)		

종별관련 거래내역 생성

이전부속지급 가져오기

자료구분에서 가져오기

징수구분 일괄변경

파일다운로드

파일업로드

세부내역(엑셀 업로드시 사번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성명/거래처명	주민번호	징수구분				주민번호				잔지급액		
			개인번호/거래코드	금액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기타공제		공제계	
1	특강자	94381	기타-외부인 특강료, 수당 및 원고료등	300,000	24,000	2,400	0	515-04-73212	0	0	0	26,400	273,600
2	대구은행	0	대구은행	300,000	24,000	2,400	0	207-13-304226	0	0	0	0	26,400
3	대구대교비	92470	대구은행	26,400	0	0	0	207-04-000040-5	0	0	0	0	26,400
합계				326,400	24,000	2,400	0		0	0	0	26,400	300,000

❖ 수입결의서

- [품의서 가져오기] 클릭하여 결재 완료된 품의서 가져오기
- [결의서구분]에서 '수입' 선택
- [전도/미지급금]에서 '일반' 선택
- [부속지급내역] 거래처명에 제세예수금을 공제한 사람(인건비 지급 받는 자)을 기재

● 기본정보 저장 닫기

회계년도	2023	결의서번호	G150045202300007	작성일자	2023-04-11 화
회계구분	교비	비등록금	작성자	정재경	
결의서구분	수입	전도/미지급금	일반	관련결의서번호	
금액	26,400	시설공사	사한업음	건축물관리번호	
내역	[대학혁신]○○○프로그램 특강료(○○○)제세예수금				
작성부서	대학혁신사업추진단 대학혁신사업추진단	종의부서	대학혁신사업추진단 대학혁신사업추진단	예산부서	대학혁신사업추진단
재원	국고(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0111] 사업 관리 및 운영	예산배정학과	
출납구분		출납예정일자	- -	지체상환금	0
비고					

● 세부품목 추가 삭제

순번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계정과목
1	소득세		1		24,000	24,000	교비)제세예수금-소득세-기타소득
2	지방소득세		1		2,400	2,400	교비)기타학생경비-기타-
							0

부속지급내역 정산서 시설하자 공공요금 건물비용

● 부속지급내역서 저장 삭제 닫기

결의서번호	G012755202300044	품의서번호	012755202300036	결의서금액	26,400
내역서구분	공동	내역	[대학혁신] 메이커 전문인력 양성 교육(IOT라틴) 강사비 제세예수금		

중빙관련 거래내역 생성 이전부속지급 가져오기 자료구분에서 가져오기 징수구분 일괄변경 파일다운로드 파일업로드

● 세부내역(엑셀 업로드시 사번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삭제

순번	성명/거래처명	계인번호/거래	주민번호	내역	지급액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인
1	특강자(○○○)			[대학혁신] 2023년 대학	26,400				대구대학교

❖ 대체결의서

- [결의서구분] ‘대체’ 선택
- [전도/미지급금] ‘미지급금’ 선택
- [세부품목] ‘차변/대변’ 란에서 ‘차변’ 선택
- [세부품목 행] ‘추가’ 를 클릭 → [계정과목] ‘미지급금-국고법인카드-기타’ 로 선택
→ [차변/대변] ‘대변’ 선택. 금액은 ‘차변’ 금액과 동액으로 기재
- [부속지급내역]에 카드 사용한 ‘거래처명’, ‘지급액’ 만 작성
 - ※ 전월(1일~31일)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당월 5일 이전에 반드시 [대체 결의서] 작성 및 결재 완료 바람
 - ※ 대체결의서 작성 시 당월에 해당하는 건만 작성
(ex. 한 프로그램으로 3, 4월에 걸쳐 카드사용 시 월 별로 품-결의서 작성)

● 기본정보

회계년도	2023	결의서번호	G150045202300007
회계구분	교비	비등료금	작성일자
작성자	정재경	작성일자	2023-04-11 화
결의서구분	대체	전도/미지급금	미지급금
금액	279,000	사실공사	사항없음
내역	[대학혁신]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부서별 간담회 (디지털혁신팀 외 1건)		
작성부서	대학혁신사업추진단 대학혁신사업추진팀	종의부서	대학혁신사업추진단 대학혁신사업추진팀
재원	국고(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8111] 사업 관리 및 운영
출납구분		출납예정일자	- -
비고			

● 세부품목

순번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계정과목
1	회의비(식대)_4/3		1		200,000	200,000	교비)기타학생결비-기타-
2	회의비(다과)_4/3		1		43,000	43,000	교비)기타학생결비-기타-
3	회의비(다과)_4/5		1		36,000	36,000	교비)기타학생결비-기타-
4	미지급금					279,000	교비)미지급금-국고법인카드-기타-

원가부서	종의서번호	자재
	150045-202300009-01	차변
	150045-202300009-02	차변
	150045-202300009-03	차변
	150045-202300009-04	대변

● 부속지급내역시

결의서번호	G150045202300007	종의서번호	150045202300009	결의서금액	279,000				
내역서구분	공통	내역	[대학혁신]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부서별 간담회 (디지털혁신팀 외 1건)						
증빙관련 거래내역 생성 이전부속지급 가져오기 자료구분에서 가져오기 장수구분 일괄변경 파일다운로드 파일업로드									
세 부내역(엑셀 업로드 시 사번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삭제									
순번	성명/거래처명	계인번호/거래	주민번호	내역	지급액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인
1	서산속			[대학혁신] 2023년 대학학	200,000				대구대대학혁신
2	(주)씨엔코퍼니			[대학혁신] 2023년 대학학	43,000				대구대대학혁신
3	주식회사 동진에프			[대학혁신] 2023년 대학학	36,000				대구대대학혁신



출장허가원 작성 요령

- ★ TIGERS+ → 공통업무 → 전자결재 → 문서작성 → 출장허가원 클릭
- ★ 출장기본
 - 출장비구분: 일반(본부) 또는 교원 임장지도의 경우 일반본부(임장지도)
 - ※ 일반본부(임장지도)로 선택할 경우 교원 업적에 포함됨
(단, 단과대학 예산을 통한 임장지도비 수혜 불가: 중복지급에 해당)
 - 장소 및 용무 등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관련된 출장에 한하여 상세하게 기록
- ★ 예산정보
 - 예산부서: '기획처 대학혁신사업추진단' 선택
 - 예산구분: (사업예산)(대학혁신)사업관리 및 운영
 - 회계구분: '비등록금 회계' 선택
 - 계정과목 클릭하여 '기타학생경비- 기타' 선택
 - 예산구분(사업명): 일반 → 총무팀 or 교무인사팀 선택
- ★ 비고: '대학혁신지원사업' 문구 기재
- ★ 출장 또는 연수 주최기관의 중복 지원이 있을 경우 출장비 내역의 세부항목 체크박스 해지 요망
- ★ 출장 관련 문서 첨부

● 출장기본

직급	계약직(연봉-국)	소속	대학혁신사업추진팀	보직명	미보직
출장비구분	일반(본부)	교육관련출장	없음	연락처	5328
출장기간	2023-04-17 월	2023-04-19 수	출발(도착)시간	09:00	17:00 (HHEMM)
편선지	서울-KTX	KTX(특)지는 교무위원만 지정!		업무대체자	
장소	구체적 장소 입력	동행자			
용무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관련된 출장에 한함				
주최기관					
논문제목					
교육훈련기관		회비	0		
학교차량	☐ 왕복교통비 미지급, 일비 1/2지급) ☐ 숙박식사제공여부 ☐ 제공 (식비 1일분만 지급)				
소명사항					
연구준수사항	☐ 본인은 연구부장병원의 종류 및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출장비내역

왕복교통비	☒ 지급	43,500	+	43,500	=	87,000
일비	☒ 지급	20,000	+	3	일	= 60,000
숙박비	☒ 지급	70,000	+	2	박	= 140,000
식비	☒ 지급	24,000	+	3	일	= 72,000
기타						0
합계	☒ 지급					359,000

● 유의사항

첨부문서 부속서류

● 외부강의/회의 등

유형	
기관명	
사료금총액	0
주제	
담당부서	
강의시간	0
연락처	
비고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사용

● 예산정보

예산부서	기획처 대학혁신사업추진단
예산구분	(사업예산)(대학혁신)사업관리 및 운영
계정과목	교비)기타학생경비-기타-
예산배정학과	
예산구분(사업명)	일반->총무팀
회계구분	☐ 등록금회계 ☒ 비등록금회계 계정과목

첨부

삭제



사업비 집행 기준 및 증빙 양식

1. 강의료

집행기준

❖ 1회성 특강 강의료

구분	지급기준	지역구분	집행 상한액(원)	비고
특별 강사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장·차관, 기관장, 총·학장 등)	없음	500,000	1일 기준
일반 강사	특별강사 이외의 자 (타 대학 교수, 해당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술 자격소지자 등)	서울, 경기, 제주, 강원지역	400,000	
		중부권 (호남지역포함)	350,000	
		기타지역	300,000	
교내 강사	대구대학교 재직 중인 교직원	-	150,000	

- ① 대구대학교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서의 특강료 기준을 준용함
- ② 2시간 이외의 1회성 특강 기준이며, 원고료, 식비, 교통비 등의 일체 부대 비용이 포함된 금액
- ③ 전임교원 및 해당 학기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강사의 경우 세금공제 생략
- ④ 원격강의(비대면)일 경우 지역구분 없이 기타지역 지급액을 따름
- ⑤ 외부 초빙 강사의 경우, 위 기준으로 강의료 지급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여 총장 승인(결재)을 득한 후 지급 가능

❖ 수업형식의 연속강의 강의료

구분	지급기준	상한액(원)
전임교원	주간(09:00~17:59)	시간당 24,000원
	야간(18:00~21:59)	시간당 27,000원
산학교원	주·야간	시간당 50,000원
시간강사, 겸임교원, 명예 교수, 직원 등	2022년 시간 강사로 및 계절학기 강사로 지급기준 준용 [붙임 1] 참조	

※ 위 기준으로 강의료 지급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여 총장 승인(결재)을 득한 후 지급 가능

증빙자료

- 수강자 명부
(또는 출석부), 강의사진,
특강자료, 등
- 강사 이력서
(주소, 연락처 포함)
- 강의료 청구서, 신분증,
통장사본
- 전임교원: 청구서 X

- 출석부, 강의사진,
특강자료 등
- 강사 이력서
(주소, 연락처 포함)
- 강의료 청구서, 신분증,
통장사본
- 전임교원: 청구서 X

2. 발표비, 사회비, 토론비, 통역비, 번역비, 상담비

집행기준

- ① 각종 프로그램/행사의 발표비, 사회비, 토론비, 통역비, 상담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기준은 아래와 같음
- ② 발표비, 사회비, 토론비, 통역비는 1일, 2시간 내외 기준임
- ③ 번역비는 페이지당 기준으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집행 수 있으며, 상담비는 전화상담 및 개인(대면)상담 세부 기준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

구분			집행상한액(원)	비고
발표비	외부 초청자	특별인사	500,000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장·차관, 기관장, 총·부총장 등)
		일반인사	300,000	타대학 교수, 해당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술 자격소지자 등
	내부인사	교직원	100,000	본교 교수, 직원
		재학생	70,000	본교 재학생
사회비	외부인사		100,000	—
	내부인사		50,000	—
토론비	외부인사		100,000	—
	내부인사		50,000	—
통역비	통역사		100,000	—
번역비	번역자		300,000	1P당 15,000원을 기준으로 합 단, 파워포인트 자료 4p는 A4 1p로 간주
상담비	전화상담(15분 내외)		1건당/15,000원	상담센터 전문상담에 한함
	개인(대면)상담(50분 내외)		1건당/30,000원	

※ 상기금액은 원고료, 식비, 교통비 등의 일체 부대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2023년 대구대학교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서(P.152참조)에 따라 동일(회기) 행사(프로그램)에서 위의 수당은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위 기준으로 강의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여 총장 승인(결재)을 득한 후 지급 가능

증빙자료

- 발표 자료, 발표 사진, 참석자 명단
- 이력서(주소, 연락처 포함)
- 청구서(외부인사/재학생: 세금 공제 시 필요), 신분증, 통장사본
- 별도의 교통비 지급 시 여비 실비 영수증(KTX 등) 제출
- 상담기록지, 이력서(관련 상담자격 필첨)
- ※ 상담자격: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이상, 국가자격증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등

3. 식사비, 다과비 및 회의 경비

집행기준

구분		집행상한액	비고
회의비 (식비/다과비)	일반	20,000원 / 인	업무회의비(위원회 회의 포함)는 다과비를 포함한 일체경비를 1인 기준으로 20,000원 범위내 집행
만찬비		30,000원 / 인	일반 회의 외 워크숍, 성과포럼, 세미나 등의 행사 시 집행 가능

- ① 그 외 회의에 필요한 회의실 대여료, 자료인쇄 및 제본 등의 경비는 사업 계획 수립 시 승인을 받아 지급 가능
- ② 사업 수행과 관련한 경비로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회의록(행사결과보고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③ 다음의 경우 원칙적으로 식사비, 다과비 및 회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음
 - 법정 공휴일, 토·일요일(단, 행사일 및 사업 업무 관련인 경우 예외로 함)
 -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본교 근거리 이내 집행)
 - 비정상 시간대(23시 이후 심야 시간대) 사용
 - 사업목적과 무관한 유흥주점, 미용, 레저, 사행업종 사용

증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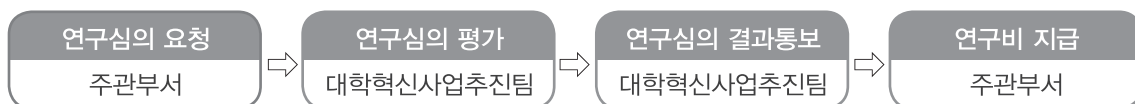
- 현금영수증/법인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
- 행사 자료, 참석자 명부, 행사 결과보고서
- 회의록

4.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비(연구비)

집행기준

- ①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등을 감안해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통보해야 함
- ② 연구비는 반드시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혁신운영위원회(연구심의분과)의 연구결과물 심의를 통한 후 지급 가능하며, 주관부서의 자체 연구심의를 거친 경우 아래의 절차를 생략하고 지급 가능

〈심의절차〉



※ 연구심의 요청 시 ‘연구심의 신청서’ 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구분		세부 지급기준		
교육 콘텐츠 (MOOC, OCW, 플립드러닝 등) 개발		콘텐츠 구분	집행 상한액(원)	비고
		MOOC	3,000,000	학점에 따라 상이
		OCW	2,100,000	3학점, 10주 기준
		플립드러닝	300,000	1과목 기준
		블렌디드러닝	개발 분량에 따라 다름	1과목 기준
		강의소개동영상	100,000	1과목 기준
		MOOC, 플립드러닝 운영자원을 위한 TA 인건비는 보조인력 인건비 기준에 따라 집행		
교과 및 교재개발 연구	교과과정 및 교과목개발	① 연구 결과물은 최소 50p 이상이어야 하며, 연구비는 1p당 최대 20,000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 (파워포인트 및 사진 자료는 4p당 A4 1p로 간주) ② 새로운 교과목 개발만 인정. 기존의 교과목 일부 수정 및 개정 불가 ③ 기존 교과목 중 PBL 수업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교과개발로 인정함		
	교재개발	① 연구 결과물은 최소 100p 이상이어야 하며, 연구비는 1p당 최대 20,000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 (파워포인트 및 사진 자료는 4p당 A4 1p로 간주) ② 새로운 교재개발만 인정. 기존의 교과목 일부 수정 및 개정 불가		
정책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의 주제, 기간, 전문성 등을 고려해 연구비를 책정해야 하며, 연구비는 교내 ‘정책연구위원회 연구수당 지급 지침’에 준하여 지급 ※ 2023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서 P. 153참조 단, 위 기준으로 연구비 지급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명시(위원의 역할 및 전문성 등)하여 총장 승인(결재)을 득한 후 지급 가능		
소그룹 연구모임 지원		① 소그룹 연구모임을 통한 교수법 개선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② 연구보고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활용방안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③ 연구 결과물은 최소 50p 이상이어야 하며, 연구비는 1p당 최대 20,000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 (파워포인트 및 사진 자료는 4p당 A4 1p로 간주)		

증빙자료

• 계획서 및 관련 계획 문서 • 연구결과물(보고서 등) • 근무일지(TA 인건비에 한함)

5. 학생, 교수 활동 지원비

집행기준

① 학생의 자기주도 활동과 교수의 수업개선 활동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구분	상한액		대상	운영 기준	
멘토 활동지원비	교내	100,000원 이내 / 월	재학생, 교직원	최소 2회 이상 운영	
	교외	200,000원 이내 / 월	외부 인사	자체 계획 수립 후 운영	
학생 서포터즈 활동지원비	해당년도 최저시급 기준 / 시간 당				
학생활동 지원금	학습동아리 등의 동아리 지원비, 경연대회 참가비, 재료비, 자료 구입비, 국내·외 여비, 식비 등 ※ 사업계획에 따라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함				
	국내·외 여비	시외/고속버스	철도	선박	항공
	정산방식(기준)	실비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비(이코노미)

② 학습성과 제고 등을 위한 학생지도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집행할 수 있음

구분	상한액	대상
학생지도비	100,000원 이내 / 프로그램 단위	교직원

증빙자료

- 정산서
- 멘토링일지(활동사진 포함)
- 청구서(외부인사/재학생: 세금 공제 시 필요)
- 실비정산 현금영수증(대학사업자등록번호: 515-82-02603)
- 학생지도결과보고서(학생지도비 증빙)

예시

구분	증빙자료
전시회 참가비	참가확인증, 현금영수증, 결과보고서 등
재료비	현금영수증, 물품사진, 견적서, 결과보고서 등
항공료	현금영수증, e-티켓, 결과보고서 등
식비	현금영수증, 활동사진, 참석자날인부(회의록 대체 가능), 결과보고서 등

6. 행사 진행요원비

집행기준

사업 추진과 관련한 행사 동원 인력에 대해 적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단, 전일제조교는 근무시간(09:00~17:00) 이후 활동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

구분	집행상한액	비고
행사 진행요원비	해당년도 최저시급 기준/시간	후불 계좌이체로 지급

증빙자료

- 보조인력 근무내역서
- 청구서(세금 공제 시 필요)
 - 125,000원 초과시 8.8% 공제 필수

7. 경진대회 등의 공모 프로그램 시상금(시상품)

집행기준

- ① 사업계획서에 따라 현금 및 현물로 시상금 지급 가능
(※ 시상금은 반드시 계좌 이체로 지급해야 함)
- ② 시상품을 지급하는 경우 수령인 확인증(수불대장)을 반드시 작성(학과, 학년, 성명, 자필서명)

증빙자료

- 심사결과표 또는 확인문서
- 심사근거 실적(물)
- 시상품 수불대장
- 청구서(세금 공제 시 필요)
 - 250,000원 초과시 4.4% 공제 필수

8. 경진대회 등의 공모 프로그램 심사비

집행기준

각종 경진대회, 공모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심사건수 및 심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심사비 기준을 차등화하여 지급할 수 있음

구분		심사건수	집행상한액	비고
일반	교내인사 (대구대학교 재직중인 교직원)	—	50,000원 이내	1회 기준
	교외인사	—	100,000원 이내	
Learning SIG+		25개 이하	100,000원 이내	
		50개 이하	200,000원 이내	
		80개 이하	300,000원 이내	
		80개 초과	400,000원 이내	
학술 논문/자서전 공모전, 학생 맞춤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		25개 이하	100,000원 이내	
		50개 이하	200,000원 이내	
		50개 초과	300,000원 이내	
독후감 공모전		100개 이하	100,000원 이내	
		200개 이하	200,000원 이내	
		200개 초과	300,000원 이내	

※ 심사를 주관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은 소관업무로 보아 해당 비용을 수혜할 수 없음

※ 위 기준으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여 총장 승인(결재)을 득한 후 지급 가능

증빙자료

- 심사위원별 심사표
- 경진대회, 공모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 청구서(외부인사)
 - 125,000원 초과시 8.8% 공제 필수

9. 여비

집행기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출장의 경우, 본교 국내·외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집행할 수 있음

증빙자료

- 출장허가원
- 프로그램 사업 계획 공문

10. 비자산성 구매(인쇄비, 소모품 구입비, 수수료, 기타용역 등)

집행기준

- ① 100만원 이하 인쇄, 복사, 인화, 사무용품(소모품) 구입 경비 및 공공요금(수수료, 시설이용료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 등), 기타 용역 등

- ② 도서구입은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도서 구매 가능

※ 집행 불인정 사례: 신문, 피복관리비, 개인 소모성 경비

증빙자료

- 관련 사업계획 문서
- 견적서(물품내역 포함)
- 타견적서(50만원 이상의 경우)
- 세금계산서

- ③ 100만원 초과 계약 및 구매(입찰)는 대구대학교 본부 구매 절차를 준용

※ 수의계약 시 주관부서에서 총장 내부결재로 진행하며, 대구대학교 본부 구매 부서의 추가 검토(협약)가 필요함 또한, 내부결재에 해당 사유를 필히 기재하여야 함

- 관련 사업계획 문서
- 입찰결과내역
-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서
- 세금계산서
- 견적서

11. 현장실습 지원비(기관/학생)

집행기준

- ①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운영경비 지급 가능
* 각종 운영경비: 실습지원비, 참가기관 운영지원금 등
- ② 단순한 식사비, 다과비 등 교육과정 운영과 무관한 경비로 집행할 수 없음
- ③ 교육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단과 협의 후 집행 가능

증빙자료

- 프로그램 운영 계획 공문
- 현장실습 수강 학생 명단
- 현장실습 학생 평가표
- 기타 항목(재료비, 강사료, 교재비 등) 증빙서류

12. 학생 학술연구 지원비

집행기준

- ① 학부 재학생/대학원생 대상 학술연구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 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논문공모전에 응모하여 출품하는 경우 신청 팀 단위로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기타소득세 8.8% 공제 필수

구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SCOPUS	SCI급 논문 (SCOPUS제외)
지원금(상한액)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500만원

- ② 논문심사비 및 게재료는 별도 실비 지원

증빙자료

- 관련 사업계획 문서
- 결과보고서
- 논문별쇄본 또는 공모전 출품 논문
- 논문출품증명서 또는 공모전 개최 및 접수 증빙서류

13. 외부기관 위탁교육 경비

집행기준

- ① 사업 추진부서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단과 사전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음
(불필요 항목 및 과다지출 여부 등 검토)
- ② 사업 추진부서는 결과보고서 제출(만족도 조사)

증빙자료

- 계획 문서, 계약서류
- 결과보고서(명단, 만족도 조사결과, 사진 등)

14. 장비 구입비

집행기준

- ① 3천만원 이상 장비 · 기자재를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목록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자체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자체 계획변경 후 집행 가능
- ②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 서비스에 등록* 하여 관리
 - * 연구장비 명칭(한글, 영문) 및 모델명, 연구장비 제작사, 제작국가 및 공급사, 연구장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연구장비 활동 분야 등
 - ※ 1억원 이상의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 · 운영
 - ※ (참고)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2016. 12. 5.)
 - ※ (참고)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2016.12.)
- ③ 장비심의 관련 문의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26) / 한국연구재단(042-869-6164)

증빙자료

- 관련 계획 문서
- 납품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진)

15. 전담인력 인건비

집행기준

- ① 사업계획서에 명기된 신규채용 인력(교원, 직원, 연구원 등)에 대한 인건비는 대학 자체 보수 기준을 준용하여 업무의 양,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 ② 신규 채용인력의 신분 및 복무사항에 있어서는 본교 인사규정에 따르며, 신분의 유지는 사업 기간으로 할 수 있음

증빙자료

- 채용계약서(대학혁신지원사업 전담 표기 필요)

16. 대학혁신지원사업 협의회 협의회비

집행기준

- 대학혁신지원사업 협의회 협의회비를 사업비(국고)로 집행 가능

증빙자료

- 회비 납부요청 문서

17.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집행기준

- ① 사업과 관련한 사업추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교외 위원에 대해 위원 수당을 집행할 수 있음

구분	심사건수	집행상한액	비고
교외 위원 수당	서울, 경기, 제주, 강원지역	400,000	교외 위원에 한해 지급
	중부권(호남지역포함)	350,000	
	기타지역	300,000	

※ 상기 수당은 원고료, 식비, 교통비 등의 일체 부대 비용이 포함된 금액

※ 위 기준으로 수당 지급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여 총장 승인(결재)을 득한 후 지급 가능

증빙자료

• 회의 개최 문서 • 회의 참석 증빙 서류 (회의록 등) • 청구서

- ② 사업 관련 연구·개발 결과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 연구·심의분과 심의비를 집행할 수 있음(해당 규정: 대구대학교 대학혁신사업추진단 운영규정 제 6조 ⑤항)

구분	집행상한액(원)
연구·심의분과 심의비	50,000원 / 건

증빙자료

• 심의계획 문서 • 심의 평가서 등의 결과물

〈공통 사항〉

- 상기 예산 항목 외의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단의 승인을 얻어 본교 예산편성·집행 기준, 구매 기준(절차)을 준용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상기 기준으로 관련 사업비 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총장 승인을 득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계약 관련 사항은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함
- 성과관리를 수반하지 않는 일회성 단발성 사업 운영비는 집행이 불가함
 - 특히, 자격증 및 어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성과 관리를 수반하여 프로그램 운영
- 어학시험, 자격취득 등 응시료 지원은 집행이 불가함

[붙임 1]



2022학년도 시간강사료 및 계절학기 강사료 지급표

(단위: 원 / 시간당)

구분			2022학년도 집행상한액	비고
대학 및 대학원	주간 (09:00~ 17:59)	우대(외부강사)	81,000	학위 및 전업 여부의 등급 구분없이 단일 단가 적용
		기본 (겸임교수, 명예교수 등 비전임교원)	43,000	동결
	야간 (18:00~ 21:59)	우대(외부강사)	84,000	학위 및 전업 여부의 등급 구분없이 단일 단가 적용
		기본 (겸임교수, 명예교수 등 비전임교원)	46,000	동결

※ 겸임교수, 명예교수 등 비전임교원의 강사료 기준이 되는 시간당 강사료는 기본강사료로 한다.

청 구 서

1. 행 사 명: (대학혁신)

2. 금 액: 금 원

(₩)

* 공제내역

- 소 득 세: 원

- 지방소득세: 원

- 실 수령액: 원

상기 금액을 _____ 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 . . .

청 구 인: (날인 혹은 서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주 소:

연 락 처:

계 좌 번 호: _____ 은행 _____

(본인계좌)

※ 해당자가 국외거주자 내지 외국인(비거주자)일 경우 여권사본 첨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구분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보유목적	거부권 및 불이익
필수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5년	대금지급	동의 거부시 대금 지급 불가

■ 법률에 의해 동의 없이 처리되는 개인정보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에 따라 원천세(기타소득) 신고를 위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금액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국세청에 연1회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항목	이용기간	제공목적	거부권 및 불이익
대구은행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	대금지급 후 5년 (은행법)	비용지급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 대금 지급 불가함

개인정보의 필수항목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대구대학교 총장 귀하

회 의 록

회의주관 부서(기관):

회의명						
일시	년 월 일 시간 (:)					
장소						
의안						
토의내용 요지						
합의사항						
이견사항						
참석현황	참석대상자	명	참석자 설명			
	참석자	명	불참 내역			
	불참자	명				
참석자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작성자	(인)		확인자	(인)		

※ 참석자가 많은 경우 별지에 참석자 날인부 첨부

※ 참석자 설명: 참석자 내용을 기술

대학혁신지원사업 행사 참석자 날인부(학생용)

행사명:

행사일시: 년 월 일 시

순번	학번	성명	학년	성별	소속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대학혁신지원사업 행사 참석자 날인부(학생외)

행사명:

행사일시: 년 월 일 시

순번	성명	소속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대학혁신지원사업 보조인력 근무 내역서

- 근무자명: 소속: 학번(사번): 신분:
- 세부사업:
- 참여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순번	근무일자	근무시간	근무내역
1	00 / 00(요일)	: - : (시간 분)	
2		: - : (시간 분)	
3		: - : (시간 분)	
4		: - : (시간 분)	
5		: - : (시간 분)	
6		: - : (시간 분)	
7		: - : (시간 분)	
8		: - : (시간 분)	
9		: - : (시간 분)	
10		: - : (시간 분)	
11		: - : (시간 분)	
12		: - : (시간 분)	
13		: - : (시간 분)	
14		: - : (시간 분)	
15		: - : (시간 분)	
16		: - : (시간 분)	
17		: - : (시간 분)	
18		: - : (시간 분)	
19		: - : (시간 분)	
20		: - : (시간 분)	

- 근무 내역: 총 ()일 / ()시간

위의 근무내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_____ (인)

[대학혁신] (세부사업/프로그램 명 기재) 멘토링 일지

구성원 정보					
구분		성명	학과(학부)	학년	학번
참여 학생	멘토				
	멘티				
일시				장소	
활동 내용: 					
결과/멘토의견: 					
차기 추진사항: 					
멘토 활동사진(회차별 1장 이상의 활동사진 첨부 필수) 					

확인일자: 20 . . .

확인자: _____ (서명)

[대학혁신] (세부사업/프로그램 명 기재) 만족도 조사지

20 학년도 (세부사업/프로그램 명 기재)에 참여한 학생의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여 추후 사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전반에 관하여 문항별로 적절한 항목에 ○로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번호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각종 프로그램(행사) 준비가 잘 되었습니까?					
2	프로그램 진행방식과 내용이 효율적이었습니까?					
3	강의자가 적절한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생의 요구(질문 등)에 충실한 피드백을 제공했습니까?					
4	이 프로그램이 전공 수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5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에 종합적으로 만족합니까?					

2. 본 사업(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좋았던 점과 그 이유 (20자 이상)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과 그 이유 (20자 이상)

대학혁신지원사업 물품(홍보물, 기념품, 시상품, 도서) 수불대장

세부 사업명				행사명			
				행사일			
순번	물품명 / 도서명	소속	학번(사번)	성별	성명	수령확인 (친필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프로그램 명] 학생 활동지도 보고서

지도 교수	성명			연락처	
	소속				
참여 학생	구분	성명	학번	소속	연락처
	팀장	홍길동	219100000	000학과	010-0000-0000
	팀원				
	팀원				
	팀원				
팀명					
주제					
활동 내용 및 의견					
상기와 같이 [프로그램 명] 학생 활동지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지도교수: (서명)					

대학혁신지원사업 증빙용 행사 사진

행사명			
행사일시		장소	
〈사진 1〉			
〈사진 2〉			

※ 행사(특강/회의/학생활동/기타) 현수막, 참여인원(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2~4매)

신분증 및 통장사본

행사명			
성명		은행, 계좌번호	
<신분증>			
<통장사본>			

대구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구·개발 결과 심의 신청서

연구주관부서			부서별 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사업코드	
연구명				
연구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자 (연구참여인원: 명)	책 임 자	(성명)	(소속)	
	공동참여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연구 유형 (☐표시)	☐ 교과과정 및 교과목 개발 ☐ 교재개발 ☐ 정책연구 ☐ 소그룹 연구모임			
연구 내용 요약(목적, 필요성, 연구내용, 방법, 일정, 기대효과 등)				
신청연구비			원	

[별첨] 심의신청 공문, 연구계획서, 연구결과 증빙서류(연구보고서 등) 파일 각 1부

상기와 같이 연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구대학교 대학혁신사업추진단장 귀하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MANUAL



***PART 4.* 한국연구재단 대학혁신지원사업 ('22 ~ '24)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PART 4

한국연구재단 대학혁신지원사업('22~'24)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제정 2022. 02. / 개정 2023. 05.

1. 기본 원칙

-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을 제외한 항목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 대학에서 수립한 자율혁신계획에 따라 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 등 학생 지원 영역을 우선 편성
 - 우선 편성 이후 대학이 필요로 하는 혁신지원사업 이외 인건비 및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를 자율혁신계획에 반영하여 총액 한도 내 편성 가능
- 사업수행과정에서 적용되는 상위법령 및 지침*, 학칙 준수

*[예시] ①계약방법·절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②국립대법인 및 공립대 → ‘국립대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각종 상위 법령, 회계 관리 규칙 및 제 규정·지침 등

③사립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관련 지침

- 사업비는 대학(교비)회계에 별도 계정(계좌) 설치하여 중앙관리
-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사업비 집행절차 및 세부 집행방법은 관계법령 및 기본계획, 동 기준의 범위 내에서 수립한 대학 자체 지침에 따름
-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지출결의서를 통해 집행하고, 증빙서류(전자문서 형태 가능)는 사업 종료 후 5년 간 보관
- 당해연도 사업비는 매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되, 필요시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월 가능
-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제출
-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변경시 대학혁신운영위원회(대학 자체 심의기구) 심의 후 변경 가능하며, 경미한 집행계획 변경사항은 내부결재 등에 의거하여 변경 후 대학혁신운영위원회에 사후보고 가능
 - ※ 단, 적정규모화 계획('23~'25) 관련 내용은 자체 변경 불가
 - ※ 변경사항은 성과(연차, 종합)보고서 제출시 별도 제출
- 사업기간 중 발생이자는 사업기간 중 대학 자체 심의(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하되,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는 종료 시 국고반납
- 사업비 부당 사용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의 회수, 삭감 등이 가능하며, 대학은 부당 사용 내용 발견 시 자체점검 후 재단에 보고
 - ※ 정밀정산 결과 지적대학은 추후 정밀정산 대상으로 우선 포함 검토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등 사업 관련 유·무형 산출물은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함

2.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

NO	비목	집행 불가 항목	비고
1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중복·이중지원 경비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등)	• 사업 수행에 따른 부가적 업무 수당(강사로 및 교재 개발비 등) 지급 가능
2	실험·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기자재 구입 시 대학 자체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가능 ※ 1억원 이상의 장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운영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 ※ 개별 기자재에는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 구입재원(대학혁신지원사업), 구입연월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스티커 혹은 바코드, RFID칩 등을 부착하여 관리
3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 건물의 신축 투자, 토지 매입비	•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4	인건비	• 급여, 수당 등 통상 임금이 아닌 명예퇴직금 • 기존 교직원의 임금 인상 목적 비용 • 사업 미참여 교직원 인센티브	• 인건비는 연도별 사업비 총액의 25% 이내 집행 가능 • 기존 교직원의 인센티브는 연도별 사업비 총액의 5% 이내 집행 가능 ※ 인센티브의 경우, 대학 자체평가규정 및 기준 마련하여 지급·관리 • 사업 참여여부 및 지급기간, 지급액, 지급인력 변동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결재 문서 등을 증빙으로 구비하여 관리
5	장학금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개인 지원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 불인정
6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 사업과 무관한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 세부과제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 대가성 지출 ※ 참여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 등 • 외유성 출장비	• 연도별 사업비 총액의 10% 이내 집행 가능 •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기타 활동 수행을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여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 경비, 신규 채용인력 공개 임용시 소요비용 및 타 비목으로의 편성이 곤란한 항목 편성·지급 가능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MANUAL

발행일_ 2023. 04.

발행처_ 대구대학교 대학혁신사업추진단 대학혁신사업추진팀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연락처_ 053. 850. 5325~8